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37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이성권·김미애·안상훈
김용태·이만희·조은희
서지영·정연욱·서범수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일을 법률상의 ‘설계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의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시·유포가 금지되는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의 범위를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73조제1호의2”를 “제72조제3호”로, “설계도 등의 정보”를 “설계도 등의 정보(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2조제3호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중 “설계도 등의 정보”를 “설계도 등의 정보(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 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 · 화약류(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u>제73조</u> <u>제1호의2</u> 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u>설계도 등의</u> <u>정보</u> 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에 게시 ·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 유포 금지) ----- ----- ----- ----- <u>제72조</u> <u>제3호</u> ----- ----- <u>설계도 등의</u> <u>정보(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u> <u>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u> <u>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u> <u>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포</u> <u>함한다. 이하 제72조제3호에서</u> <u>같다)</u> ----- -----.